

교수업적 평가 규정

제정 1997.05.22.

제25차 개정 2022.02.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6조에서 정한 교원업적평가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2조(평가대상) ① 교수업적평가 대상은 본교에 재직하는 일반교원과 지정형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한다.

② 교육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원, 외국인전임교원과 겸임교수,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의 비전임 교원도 필요에 따라 업적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방식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3.25.)

[전부개정 2019.12.30.]

제3조(평가유형 구분 및 평가영역 등) ① 교수업적평가 유형은 연구·교육 중점(일반평가형)과 산학연 협력 중점(산학연 친화 평가형)으로 구분하며, 매년 초 교원이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② 교수업적 평가영역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참여봉사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한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임상영역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03.25., 2022.02.28.)

③ 평가주기는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2.28.)

④ 신규임용 교원의 업적평가 단위 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재임용,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의 경우 3월 1일 및 4월 1일 임용대상자는 전년 12월 31일까지, 9월 1일 및 10월 1일 임용대상자는 동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02.28.)

[전부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22.02.28.]

[전문개정 2022.02.28.]

제2장 평가기구 및 평가절차

[장 명칭변경 2019.12.30.]

제4조(평가기구) 교수업적평가를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각 단과대학별로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19.12.30.]

제5조(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 ①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대학 교원의 업적평가를 담당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학생행복처장, 입학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처장이 된다.

③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항목 신설, 변경 및 업적평가 결과 활용 기준점수를 2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9.12.30.]

제6조(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 교원의 업적평가를 담당한다.

②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해당 학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학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7조(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결정을 받은 전임교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과 부총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8조(주관부서)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무연구팀에서 주관한다. 단, 교육영역평가 항목 중 강의 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하며 한의과대학 임상교원 진료영역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부속한방병원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03.25.)

② 각 행정부서 및 부속한방병원의 장은 교수업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연구처에 송부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9조(업적평가 절차) ① 교원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평가기간 동안의 업적을 교수업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교원업적보고서(지정서식)를 출력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속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장은 소속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교원에 대한 영역별 교원업적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는 교원의 영역별 평가점수와 단과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을 검토하고 교원에 대한 최종평가 점수를 확정한다.

④ 교육연구처장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원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3장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

[장 명칭변경 2019.12.30.]

제10조(평가방법) ① 해당년도 평가 중 한 학기만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각 영역별 점수를 1/2로 나누어 적용한다.

② 저명학술지 점수는 제3조 제3항의 업적평가 단위 기간과 상관없이 재임용은 2월 말·8월 말까지,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은 3월 말·9월 말까지 게재된 저명학술지를 추가점수로 인정한다.

③ 전적대학 경력인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기 승진하는 경우 평가대상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11조(평가의 예외 인정) ① 교무위원은 재임 중 업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본인이 신청할 경우 평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위원으로 재임 중인 교원 : 업적평가 주기(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있어 보직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업적평가를 면제한다.

2. 교무위원을 면한 교원 : 업적평가 주기(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있어 보직을 면한 당해연도에 6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에만 해당연도의 업적평가를 면제한다.

② 연구년 또는 연수자의 업적평가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업적평가를 제외하며, 병가자의 경우에는 병가로 인한 수업결손이 해당 학기의 50% 이상일 경우 해당 연도의 업적평가를 제외한다. 단, 본인이 신청한 때에는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③ 교무위원 이외의 보직 교원에 대한 평가 예외 인정 범위는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업적평가가 제외된 교원도 평가에 따른 자료는 입력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12조(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교육영역의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취득가능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조명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제13조(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연구영역의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취득가능점수의 총점은 **무제한**으로 한다. (개정 2022.02.28.)

[조명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전문개정 2022.02.28.]

제14조(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산학협력영역의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취득가능점수의 총점은 **무제한**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2022.02.28)

[본조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2.02.28.]

[전문개정 2022.02.28.]

제15조(참여봉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참여봉사영역의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은 **별표4**와 같으며, 취득가능점수의 총점은 **1,200점**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2022.02.28)

[조명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전문개정 2022.02.28.]

제16조(임상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임상영역의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은 별표5와 같으며, 임상교원의 경우 별표5에 따른 취득점수를 교육영역 중 수업항목(1.1)에 산입한다. (개정 2021.03.25.)

[조명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제17조(필수평가항목 및 기준)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각 영역별 평가항목 중 평가대상 교원이 1년의 평가주기 내에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필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6과 같으며, 승진심사 시 반영한다. (개정 2021.03.25.)

[본조신설 2019.12.30.]

제18조(징계 등에 따른 감점) 교원이 경고나 주의를 비롯해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년도 업적평가 시 감점하며, 감점기준은 별표7의 교수업적평가 감점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제19조(업적의 인정) ① 발행지연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업적은 다음년도 업적평가 때 확인하여 해당년도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처리된 인사, 포상 등의 결정 사항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발행(발간)예정인 업적은 예정증명서로 미리 평가할 수 있으나, 해당년도 말까지 반드시 결과물을 시스템에 등록(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시스템에 등록(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이미 처리된 인사, 포상 등은 당연 무효 처리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각종 연구업적은 중복평가 하지 아니하며,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명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제4장 이의신청과 평가의 활용

[장 명칭변경 2019.12.30.]

제20조(이의신청) ①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과통보(발송기준) 후 15일 이내에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는 재심사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21조(업적평가의 활용) ① 본 규정에 의한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본교 교원의 승진 및 정년 보장임용 평정, 재임용 평정, 연구년 시행, 성과급 지급 및 포상 수여에 적용한다.

② 성과급 지급 및 포상 수여는 해당연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교원 및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교원은 제외하며, 교원의 품위유지, 대학의 명예실추 및 대학발전의 기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포상 수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에 대한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 적용은 재임용은 **별표8**, 승진임용은 **별표9**, 정년보장임용은 **별표10**에 의한다. (개정 2022.02.28.)
[전부개정 2019.12.30.]

제22조(필수평가항목 기준 미충족 교원에 대한 조치) ① 연도별 평가 시 필수평가항목의 기준을 직전 연도에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연도에도 추가로 이행하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교내연구비 및 연구년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 평가기간 동안 필수평가항목을 이행하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미충족 필수평가항목의 기준을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도에 추가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책임시수 미이행 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추가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5장 보칙

[장 신설 2019.12.30.]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0.]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교수업적평가 점수에 의한 승진 및 기간제 임용 1998년도 4월 1일 이후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2. 1998년 4월 1일 이전 승진자의 교수업적 평가자료는 각 연도성과급 지급 및 포상, 해당 교원의 승진 및 기간제 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9조, 제11조 및 평정표에 대한 경과 조치)이 규정 제9조, 제11조 및 평정표는 1999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92, 2007.2.26)

-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0조(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11조(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1항, 제12조(봉사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의 규정은 2007년 업적평가시부터 적용한다.
- ③ (업적평가 활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업적평가의 활용)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평정, 기간제임용 평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하되 2004년 이후 교수업적평가결과부터 활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307, 2007.12.4)

-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0조(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11조(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제1항의 규정은 2007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38, 2008.4.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7조(업적평가의 활용) 제2항은 2007년 교수업적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84, 2008.7.7)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2009년도부터 기간제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2008년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② 부칙(기획예산과-192, 2007.2.26) 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09년도 교수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에 한하여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 2009.1.5)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의 (별표1) 교육영역 평정표(교육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 (별표

3) 봉사영역 평정표(봉사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에 대하여는 2008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교수업적평가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평가기준표의 () 괄호 안의 저명 학술지점수는 2007년도 이전까지는 가중치점수가 아닌 인정환산율로 적용하여 인정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8, 2009.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 비정년트랙교원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78, 2009.5.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적용은 2009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84, 2012.2.8)

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6, 2016.01.21)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49, 2016.03.03)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6, 2017.1.13)

이 규정은 2017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53, 2017.6.13)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15, 2017.12.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 연구영역 인정범위 및 가중치는 2018년 1월 1일 게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80, 2018.09.12)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2, 2019.01.09)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641,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의 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별표1),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별표2), 사회협력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별표3), 참여봉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별표4), 임상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별표5), 필수평가항목 및 기준(별표6) 및

교수업적평가 감점기준(별표7)은 2020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된 재임용 평가기준(별표8)은 각 교원이 현재 임용기간 종료 후 재임용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③ 개정된 승진임용 평가기준(별표9)은 각 교원이 현재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16, 2020.03.25)

이 규정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84, 2021.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용역별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은 2020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30, 202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영역별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은 2022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전부개정 2019.12.30.] (개정 2021.03.25.)

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1. 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연간 취득가능 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연간취득 가능점수
수 업 (1.1)	1.1.01 책임시수	100	200
	1.1.02 계절학기 수업	25	50
	1.1.03 강의평가	100	200
	1.1.04 계약학과 수업	15	30
	1.1.05 평생교육원 정기강좌	10	20
	1.1.06 후보강 이행여부	-	-
	1.1.07 출결관리 이행여부	-	-
	1.1.08 성적 정정여부	-	-
	1.1.09 주4일 수업배정	-	-
학생지도 (1.2)	1.2.01 (학부)동아리 지도교수	10	100
	1.2.02 (학부)공모전 이상의 지도업적	5 ~ 20	
	1.2.03 (학부)비교과프로그램 지도	10	
	1.2.04 (대학원)논문 지도 실적	2~4	
	1.2.05 (대학원)논문 심사 실적	1~2	
교육혁신 활동 (1.3)	1.3.01 수업계획서 제출기일 준수	10	20
	1.3.02 성적평가 제출기일 준수	10	20
	1.3.03 CQI보고서 제출기일 준수	10	20
	1.3.04 단기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10	140
	1.3.05 (삭 제)	5	
	1.3.06 장기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20	
	1.3.07 특성화 및 교육혁신 교과목 개발·운영	20	
	1.3.08 강의평가 우수교원 선정	40	
재학생 등록률 (1.4)	1.4.01 (학부·대학원)학과별 재학생 등록률	-	-
영역정성평가		-	100

2. 교육영역 평가항목별 인정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수 업 (1.1)	1.1.01 책임시수	<p><임상교원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수업 기준 ■ 학기당 11시간 강의 : 100점 ■ 학기당 11시간 이상 초과 강의 시 시간당 5점 가점(17시간까지 가점 인정) ■ 학기당 11시간 미만 강의 시 11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5점 감점 ■ 대학원 수업 : 수강생 5명 이상인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이 한 학기 10명 이상이고 또 다른 학기는 5명 이상일 때 : 연 6시간 인정 - 수강생이 5~9명일 경우 : 연 3시간 인정 ■ Team Teaching과목 : 본인이 실시한 수업시간만 인정 <p><임상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수업 기준 ■ 연간 책임시수 8시간 강의 : 100점 ■ 책임시수 이상 강의 시 : 가점 없음 ■ 책임시수 미달 시 : 시간당 3점 감점 ■ 대학원 수업 : 수강생 5명 이상인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이 한 학기 10명 이상이고 또 다른 학기는 5명 이상일 때 : 연 6시간 인정 - 수강생이 5~9명일 경우 : 연 3시간 인정 ■ Team Teaching과목 : 본인이 실시한 수업시간만 인정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관리규정에 의거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받아 연간 책임 시간이 22시간 이내인 보직 교원 및 신설학과 교수 등은 학기당 11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구 교육과정 등 부득이하게 연간 책임시간(22시간)을 강의하지 못하는 교원에 한하여 한시적인 책임 시간 인정여부를 책임시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 수강인원과 상관없이 대학원 수업을 기준으로 적용함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수 업 (1.1)	1.1.02 계절학기 수업	■ 과목당 25점 가점
	1.1.03 강의평가	■ 학부 및 대학원 담당교과목에 따라 1, 2학기 합산점수를 2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
	1.1.04 계약학과 수업	■ 계약학과 과목당 15점 가점
	1.1.05 평생교육원 정기강좌	■ 평생교육원 정기강좌 개설 시 10점 가점
	1.1.06 휴보강 이행여부	■ 휴·보강계획서 미제출 시 또는 휴·보강 실시 이후 7일 이내 보강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해당 교과목당 10점씩 감점
	1.1.07 출결관리 이행여부	■ 주기적인 출결관리시스템 미입력의 경우 해당 교과목당 10점씩 감점
	1.1.08 성적 정정여부	■ 성적 정정(공시)기간 이후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 학생 1명당 3점씩 감점하고, 학기당 제한점수 없음
	1.1.09 주4일 수업배정	■ 미이행 학기당 30점 감점 ※ 학사운영의 특성 상 대학원 및 평생교육융합 대학 소속 교원은 예외로 한다.
	학생지도 (1.2)	1.2.01 (학부)동아리 지도 교수
1.2.02 (학부)공모전 이상의 지도업적		■ 전국규모 이상의 공모전(대한체육회, 프로그램개발전, 창작활동 등), 공식대회(경기)에서 입상한 경우 지도업적 10점 인정 - 지역규모 대회 : 5점 - 국제규모 대회 : 20점
1.2.03 (학부)비교과프로그램 지도		■ 비교과프로그램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비교과프로그램의 지도교수로 활동한 실적에 대하여 프로그램 당 10점 인정
1.2.04 (대학원)논문 지도 실적		■ 우리 대학교 대학원만 인정함(타 대학 제외) - 석사과정 : 1인 2점, 1인 추가당 1점 - 박사과정 : 1인 4점, 1인 추가당 2점
1.2.05 (대학원)논문 심사 실적		■ 우리 대학교 대학원만 인정함(타 대학 제외) - 석사과정 : 1인 1점, 1인 추가당 0.5점 - 박사과정 : 1인 2점, 1인 추가당 1점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교육혁신 활 동 (1.3)	1.3.01 수업계획서 제출기일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1차 기한 내 제출 시 10점 부여, 미제출 시 10점 감점 ※ 학부 및 대학원 담당 교과목에 따라 제출기일 적용
	1.3.02 성적평가 제출기일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1차 기한 내 제출 시 10점 부여, 미제출 시 10점 감점 ※ 학부 및 대학원 담당 교과목에 따라 제출기일 적용
	1.3.03 CQI보고서 제출기일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1차 기한 내 제출 시 10점 부여, 미제출 시 10점 감점
	1.3.04 단기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당 10점 ■ 교내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특강, 워크숍 및 세미나 등 단기 프로그램 참여실적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수법 특강·워크숍 참여 실적
	1.3.05 삭 제	삭 제
	1.3.06 장기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수법 연구회, 수업컨설팅 및 수업모델 개발 등 장기 프로그램 참여 실적 ■ (신임교원) 임용 후 1년 이내의 신임교원은 굿스타트 프로그램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참여(20점 부여)하며, 불참 시 10점 감점
	1.3.07 특성화 및 교육혁신 교과목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주관하는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교과목 개발·운영 또는 교육혁신 교과목(융복합교과목, PBL, 캡스톤디자인, CPX, OSCE참여 등)개발·운영의 경우 학기당 20점 부여
	1.3.08 강의평가 우수교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도 단위 강의평가 우수교원 수상자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재학생 등록률 (1.4)	1.4.01 (학부·대학원)학과 별 재학생 등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학년도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반영 ■ 정원 내 재학생 등록률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점수 = (매학기 4월 1일 또는 10월 1일의 해당 학과 재학생등록률×100)/2 - (예시) A학과의 1학기 4월 1일 기준 재학생등록률이 92%인 경우 : (0.92×100)/2 = 46점 ■ 학과별 재학생등록률 증가율 대비 점수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율점수 = 당해 학년도 해당 학기 재학생등록률 - 직전학년도 동기 재학생 등록률 - (예시) A학과의 1학기 4월 1일 기준 재학생등록률이 92%이고, 직전 학년도 1학기 재학생등록률이 90%였던 경우 : 92 - 90 = 2점 <p>※ 1. 등록률점수와 증가율 점수의 합이 학기 기준 및 학년도 기준 각각 50점 및 100점을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점수를 전체 반영함</p> <p>2. 재학생 등록률이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 증가율 점수는 반영하지 아니함</p> <p>※ 다전공 학과의 학과등록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전공별 재학생 합계 ÷ 전공별 정원 합계)×100]</p>
	임상교원평가	임상교원의 경우 교육영역 '수업'에서 100점을 '임상영역'으로 대체
	영역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중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각 영역별로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우수한 업적 또는 반영되었더라도 특별히 가점할 필요가 있다고 학과장의 추천과 학장의 제청이 있고 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경우 ■ 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의 추천과 학장의 제청이 있고 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경우

(별표2) [전부개정 2019.12.30.] (개정 2021.03.25., 2022.02.28)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1.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연간 취득가능 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연간취득 가능점수
저 서 (2.1)	2.1.01 국제학술저서	200	무제한
	2.1.02 국내전문서적	100	무제한
	2.1.03 전공 관련 번역서	40	80
	2.1.04 강의용 교재, 실습용 교재, 편저서	20	40
논 문 (2.2)	2.2.01 국제 저명학술지	120~600	무제한
	2.2.02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120	무제한
	2.2.03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00	무제한
	2.2.04 국외전문학술지(국외전문학회지)	80	80
	2.2.05 국내전문학술지(국내전문학회지)	40	40
학술활동 (2.3)	2.3.01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30	60
	2.3.02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20	40
	2.3.03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초청강연	20	40
	2.3.04 학회 주관 국내 학술회의 주제발표·초청강연	10	40
예능계열 창작활동 (2.4)	2.4.01 국전 및 국전규모 출품	80	160
	2.4.02 국제전 출품	100	무제한
	2.4.03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전 출품	70	무제한
	2.4.0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회전 출품	60	무제한
	2.4.05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60	120
	2.4.06 국제 개인전 개최	150	150
	2.4.07 국내 개인전 개최	100	100
체능계열 창작활동 (2.5)	2.5.01 개인 연구발표회	100	무제한
정책 보고서 (2.6)	2.6.01 A급(국가기관 주관 대학단위평가보고서 등)	150	무제한
	2.6.02 B급(자체평가보고서 및 재정지원사업계획서 등)	120	무제한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연간취득 가능점수
	2.6.03 C급(학과인증평가 보고서 등)	100	무제한
	2.6.04 D급(대학본부 차원의 TFT 연구결과보고서 및 단과대학 발전계획 및 성과보고서)	80	무제한
	2.6.05 E급(학과 차원의 발전계획 및 성과보고서)	50	무제한
영역정성평가		-	100

2. 연구영역 평가항목별 인정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저 서 (2.1)	2.1.01 국제학술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BN 코드가 부여된 실적물 ■ 전공분야 저서로서 기존 서적(본인 저서 포함)의 30%이상이 개정된 실적물만 인정
	2.1.02 국내전문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BN 코드 또는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가 부여된 실적물 ■ 전공분야 저서로서 기존 서적(본인 저서 포함)의 30%이상이 개정된 실적물만 인정 ■ 전문적 항목을 심도 있게 저술한 서적 ■ 시집, 소설집, 평론집, 드라마대본, 서예집, 음반 등 포함
	2.1.03 전공 관련 번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전공분야 학술저서를 번역한 저서 ■ 국내 전공분야 학술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저서
	2.1.04 강의용 교재, 실습용 교재, 편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자료를 그대로 제본한 것이 아닌 정식 출판사의 ISBN을 득한 정식의 강의용 교재로서 일반적인 개론 형태의 강좌에 사용하는 서적 ■ ISBN을 부여받은 전공과목교과서 포함 ■ 여러 사람의 논문 또는 전공 관련 문예창작물 등을 묶어 편집한 출판물
	저서에 대한 인정환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시점일 기준이며, 저자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1/n로 하며, n은 참여 저자수로 총 10명 이상일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p>논 문 (2.2)</p>	<p>2.2.01 국제 저명학술지</p>	<p>경우 n=10으로 처리</p> <p>■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p>																												
		<p>■ A&HCI, SSCI, S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p> <p>■ 각 학술지 Impact Factor를 점수에 적용하여 반영하고, 학문별 Ranking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함</p> <p><A&HCI, SSCI, SCI, SCI-E></p> <table border="1" data-bbox="746 723 1417 992"> <thead> <tr> <th>Impact Factor</th> <th>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10 ≤ impact factor</td> <td>600</td> </tr> <tr> <td>5 ≤ impact factor < 10</td> <td>500</td> </tr> <tr> <td>3 ≤ impact factor < 5</td> <td>400</td> </tr> <tr> <td>1 ≤ impact factor < 3</td> <td>300</td> </tr> <tr> <td>1 > impact factor</td> <td>200</td> </tr> </tbody> </table> <p>※ JCR학문분야별 Ranking에 따른 가산점</p> <table border="1" data-bbox="746 1093 1417 1272"> <thead> <tr> <th>JCR Ranking상위</th> <th>가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상위 10% 이내</td> <td>200</td> </tr> <tr> <td>상위 10%이상 25%이내</td> <td>100</td> </tr> <tr> <td>상위 25%이상 50%이내</td> <td>50</td> </tr> </tbody> </table> <p><SCOPUS></p> <table border="1" data-bbox="746 1373 1417 1597"> <thead> <tr> <th>Cite Score</th> <th>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10 ≤ Cite Score</td> <td>240</td> </tr> <tr> <td>5 ≤ Cite Score < 10</td> <td>200</td> </tr> <tr> <td>1 ≤ Cite Score < 5</td> <td>160</td> </tr> <tr> <td>1 > Cite Score</td> <td>120</td> </tr> </tbody> </table> <p>【SCOPUS 인정 기준】</p> <p>-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Document Type 4종 : Article, Review, Erratum(조건부인정), Book Chapter(조건부인정)</p> <p>※ 1) Erratum :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 등록되어 있으면,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p> <p>2) Book Chapter : SCOPUS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p>	Impact Factor	점 수	10 ≤ impact factor	600	5 ≤ impact factor < 10	500	3 ≤ impact factor < 5	400	1 ≤ impact factor < 3	300	1 > impact factor	200	JCR Ranking상위	가산점수	상위 10% 이내	200	상위 10%이상 25%이내	100	상위 25%이상 50%이내	50	Cite Score	점 수	10 ≤ Cite Score	240	5 ≤ Cite Score < 10	200	1 ≤ Cite Score < 5	160
Impact Factor	점 수																													
10 ≤ impact factor	600																													
5 ≤ impact factor < 10	500																													
3 ≤ impact factor < 5	400																													
1 ≤ impact factor < 3	300																													
1 > impact factor	200																													
JCR Ranking상위	가산점수																													
상위 10% 이내	200																													
상위 10%이상 25%이내	100																													
상위 25%이상 50%이내	50																													
Cite Score	점 수																													
10 ≤ Cite Score	240																													
5 ≤ Cite Score < 10	200																													
1 ≤ Cite Score < 5	160																													
1 > Cite Score	120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경우 정규논문으로 인정
논 문 (2.2)		【SCOPUS 불인정 기준】 - 다음 7가지 Document Type은 불인정 : Editorial, Letter, Note,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
	2.2.02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지
	2.2.03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후보지에 속한 학술지
	2.2.04 국외전문학술지(국외 전문학회지)	■ 국제저명학술지 이외의 국외전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하되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SCOPUS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불인정하는 SCOPUS Document Type 7종(Editorial, Letter, Note,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
	2.2.05 국내전문학술지(국내 전문학회지)	■ 전국규모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이거나 한국연구재단 등록 또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원학회 학술지
학술활동 (2.3)	2.3.01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 발표자 구성이 3개국 이상인 국제 학술대회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된 논문으로서 학술발표논문집(proceedings)에 전문(Full text) 또는 초록이 게재된 경우
	2.3.02 국내학술대회 발표 논문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 학술대회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된 논문으로서 학술발표논문집(proceedings)에 전문(Full text) 또는 초록이 게재된 경우
	2.3.03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초청강연	■ 발표자 구성이 3개국 이상인 국제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또는 초청강연의 경우
	2.3.04 학회 주관 국내 학술회의 주제발표·초청강연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 학술대회의 주제발표 또는 초청강연
논문 인정범위 및 인정환산율		■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회지 및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 발간시점일 기준이며, 논문내용, 논문집표지, 목차, 발행연월일, 저자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시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p>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 $2/(n+1)$, 공동저자 : $1/(n+1)$로 하며, n은 참여 저자수로 총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단,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인정환산율 최소값은 50%를 적용함 ■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예능계열 창작활동 (2.4)	2.4.01 국전 및 국전규모 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미술대전(구.국전) 및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구.상공전) 등의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로 추천작가 또는 초대작가(디자이너)로 출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우에 한함
	2.4.02 국제전 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국 이상 국가의 작가가 참여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회원전 및 기획전 등의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로 추천작가 또는 초대작가(디자이너)로 출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개최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국제규모의 예술, 공예 및 디자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에 한함 ■ 3개국 미만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의 경우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으로 인정함
	2.4.03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전 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2.4.04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회전 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예능계열 창작활동 (2.4)	2.4.05 전국규모 단체전 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전 및 기획전에 출품하는 경우로 추천작가 또는 초대작가(디자이너)로 출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1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예능계 법인단체(사단법인) 또는 공인단체의 주최로서 전국규모전 이상으로 아래 내용을 동시 충족하는 전시회 - 연혁 10년 이상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원 80인 이상(전국규모) - 연1회 이상 국내(국제) 회원전 또는 초대전 개최 ■ 공인단체의 총족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카탈로그 등 증빙서류 첨부
	2.4.06 국제 개인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개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개인 단독작품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탈로그), 신작 10점 이상
	2.4.07 국내 개인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개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 개인 단독작품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탈로그), 신작 10점 이상
체능계열 창작활동 (2.5)	2.5.01 개인 연구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문화·체육 관련 법인단체에서 주최한 개인 연구발표회에 한하여 인정함(1회당)
정책 보고서 (2.6)	2.6.01 A급(국가기관 주관 대학단위평가보고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주관 기관평가인증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대학단위 평가보고서
	2.6.02 B급(자체평가보고서 및 재정지원사업계획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작성하는 자체평가보고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최초 사업신청 보고서(수정사업계획서 포함) ■ 진행 중인 재정지원사업의 차기 사업 진행과 관련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6.03 C급(학과인증평가 보고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단위 인증평가 관련 자체평가보고서
	2.6.04 D급(대학본부 차원의 TFT 연구결과보고서 및 단과대학 발전계획 및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본부 차원의 각종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 최초의 단과대학 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서
	2.6.05 E급(학과 차원의 발전계획 및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서 (집필교수에 한하여 인정함)
	정책보고서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정부재정 지원사업의 수주 및 수행 포함)에 참여하여 만들어진 제안서 및 보고서에 한함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보고서 등급에 대해 기획평가처장 및 교육연구처장의 협의와 부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영역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항목 중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각 영역별로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우수한 업적 또는 반영되었더라도 특별히 가점할 필요가 있다고 학과장의 추천과 학장의 제청이 있고 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경우

3. 예능계 전람회 분류표

전 시 회 명 칭	주 최 및 주 관	비 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사)한국미술협회	2.4.01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산업통상자원부	2.4.01
한국미술협회전	한국미술협회	2.4.05
한국공예가협회전	한국공예가협회	2.4.05
신미술협회전	신미술협회	2.4.05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전	해당 학회	2.4.03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회전	해당 학회	2.4.04

(별표3) [전부개정 2022.02.28.]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1. 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 및 연간 취득가능 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연간취득 가능점수
산학연 협력 교육 (3.1)	3.1.01 강의개발	5~10	무제한
	3.1.02 교육	1~5	
산학연 협력 연구 (3.2)	3.2.01 특허 및 실용신안	20~100	
	3.2.02 산업체 연구비 및 산학공동 연구비 수혜	2~5	
	3.2.03 사업계획서 입안	10~120	
	3.2.04 보고서	30	
	3.2.05 산학연계	5~100 이상	
	3.2.06 사업화 및 상품화	5~100	
	3.2.07 국책과제 수행실적	10~50	
산학연 협력 봉사 (3.3)	3.3.01 지도 / 컨설팅	5~10	
	3.3.02 산학연 교류	5~10	
	3.3.03 가족회사	5~15	
영역정성평가		-	100

2. 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별 인정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산학연 협력 교육 (3.1)	3.1.01 강의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연계 계약형 교과과정 운영은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교원에게 해당 점수를 부여하고, 팀티칭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산학연 연계 계약형 교과과정은 협회, 기업 등 관련 기관과 계(협)약을 통하여 개설하며, 동일 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연계 계약형 교과과정 운영 : 건당 5점 - 산학연 연계 교과과정 운영 : 건당 10점
	3.1.02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약정 산업체는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하는 채용약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약정 산업체 발굴 : 업체당 10점 ■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 지도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지도 : 1회당 5점 ■ 산업체 석박사 배출은 해당 학생의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증 또는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석박사 배출 : 석사 3점, 박사 5점 ■ 학생 취·창업동아리 지도는 동아리 지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교내 정규 등록된 창업동아리 혹은 비교과프로그램의 지원사업에 의한 창업동아리 지원의 경우 해당. ■ 창업동아리의 경우 지도교수(1.2.01) 실적과 중복하여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취·창업동아리 지도 : 건당 5점 - 최대 30점 ■ 다음의 경우 가점을 부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창업경진대회 수상: 점수×0.25, - 외부 창업경진대회 수상: 점수×0.5, - 정부 또는 지자체 창업자금(500만원 이상) 확보 : 점수×0.5) ■ 학생 창업은 해당 학생이 대표자로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경우에 인정함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창업 : 건당 20점 ■ 창업지도는 대학원생 포함 학생 면담 실적 중 창업지도 실적을 취업진로지원팀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학생 창업 활동 지도 : 건당 1점 ■ 취·창업 교과목 강의는 교육연구처 또는 세종창의교양대학에서 취·창업 교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만 인정함 - 취·창업 교과목 강의 : 강좌당 5점 ■ 전시회, 박람회 및 현장견학 지도는 참가 또는 견학계획서, 참가확인 자료, 참여학생 리스트(서명포함)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함 - 전시회, 박람회 및 현장견학 지도 : 1회당 3점
<p style="text-align: center;">산학연 협력 연구 (3.2)</p>	<p>3.2.01 특허 및 실용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등록, 상표 및 디자인 등록 및 국내외 특허 출원 : 1/N으로 계산함. 단, 발명자(개발자 등)가 본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1/15로 한다. N : 본인을 포함한 공동연구자수(대학원생, 교외발명자 포함하지 않음) ■ 국제 특허 등록 및 국내 특허 등록 점수는 출원 점수를 포함한 점수임(예시 : 기 반영한 국내 특허 출원 건의 특허 등록 시, 출원 점수 20점을 제외한 100점으로 점수 반영) ■ 출원 및 등록자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것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특허 등록 : 200점 - 국내 특허 등록 : 120점 - 국제 특허 출원 : 40점 - 국내 특허 출원 : 20점 -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등록 : 40점 - 상표 및 디자인 등록 : 20점 ■ 타 기관과 공동 소유 시 본교에 귀속된 권리 지분율에 따름)
	<p>3.2.02 산업체 연구비 및 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비에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학공동 연구비 수혜	<p>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참여비율에 따라 연구비를 산정함 ■ 연구책임자(100% 인정), 공동연구자는 참여율로 계산 - 인문·사회계 : 간접비 총액/25만원×5점+연구비수혜건수×2점 - 자연·공학계 : 간접비 총액/50만원×5점+연구비수혜건수×2점 - 예·체능계 : 간접비 총액/25만원×5점+연구비수혜건수×2점
	3.2.03 사업계획서 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입안은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사업의 연구책임자에 한정하며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여러 번 제출하여도 1회만 인정함 - 30억 이상 : 120점 - 10억 이상 30억 미만 : 100점 - 10억 미만 : 30점 - 1억 미만 : 10점
	3.2.04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반영비율 : $1/(N+2)$로 계산, 단, 주저자(제1저자)는 $2/(N+2)$로 계산함(명시된 경우에 한함) ■ N : 본인을 포함한 공동연구자수(대학원생을 포함하지 않음) - 산업체 연구보고서(최종보고서) : 30점
	3.2.05 산학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계 국내외 EXPO 작품 : $1/N$으로 계산함. 단, 공동저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 N : 본인을 포함한 공동연구자수(대학원생을 포함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건당 30점 - 외부 연구센터 유치 : 100점+(5점/억원) - 산학연계 국내 EXPO 작품 : 30점 - 산학연계 국외 EXPO 작품 : 50점 - 산학연계 기술이전(기술료) 1)인문·사회계 : 개인별기술료총액/25만원×5점 2)자연·공학계 : 개인별기술료총액/50만원×5점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3)예·체능계 : 개인별기술료총액/25만원×5점														
	3.2.06 사업화 및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화 매출 실적 : 5점/1억원 ■ 사업화 실적(시제품) : 건당 30점 ■ 신기술 인증(인증서) : 건당 50점 ■ 장비운용수익 : 1점/100만원 ■ 벤처창업(교수창업포함) : 50점 ■ 공용장비활용 : 1점/10만원 ■ 교원창업 또는 학교기업 설립 : 50점 ■ 교원창업 또는 학교기업 유지 : 10점 														
	3.2.07 국책과제 수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과제 수행 시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자이고 참여교수 중 우리대학의 교수가 60% 이상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제 ■ 수행 참여의 점수배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가중치</th> <th>연간취득 가능점수</th> <th>항목내 최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연구)단장</td> <td>25</td> <td>50</td> <td rowspan="3">50</td> </tr> <tr> <td>참여교수</td> <td>10</td> <td>50</td> </tr> <tr> <td>간사교수</td> <td>15</td> <td>50</td> </tr> </tbody> </table>	구 분	가중치	연간취득 가능점수	항목내 최대점수	사업(연구)단장	25	50	50	참여교수	10	50	간사교수	15	50
구 분	가중치	연간취득 가능점수	항목내 최대점수													
사업(연구)단장	25	50	50													
참여교수	10	50														
간사교수	15	50														
산학연 협력 봉사 (3.3)	3.3.01 지도 /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파견 활동 시 연구년 활용의 경우 3일 이상 근무해야 함 - 산업체 특강(1회성) : 5점 - 산업체 위탁교육 : 10점 -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산학협력단 인정) : 건당 5점 - 산업체 파견활동 : 1개월당 10점 														
	3.3.02 산학연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신청한 수행 실적에 한함.(증빙자료로 기술경영지도 확인서,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야 함) - 산업체 자문(기술, 경영 등) 위원 : 10점 - 산학연 협력협의회 : 건당 5점 														
	3.3.03 가족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회사 유치 관리기업수 : 건당 5점 ■ 취업박람회 유치 기업수 : 건당 15점 														
영역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협력활동, 교내외 수상 및 공훈을 포함하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p>며, 평가항목 중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각 영역별로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우수한 업적 또는 반영되었더라도 특별히 가점할 필요가 있다고 학과장의 추천과 학장의 제청이 있고 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경우</p>
<p>산학협력 영역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겸직 및 항목별 중복될 경우 그 중 최고점수만 인정함 ■ 교외봉사, 수상 및 공훈 실적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별표4) [전부개정 2019.12.30.] (개정 2021.03.25., 2022.02.28)

참여봉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1. 참여봉사영역 평가항목 및 연간 취득가능 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연간취득 가능점수
입학홍보 (4.1)	4.1.01 대학주관 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10	200
	4.1.02 대학주관 고교 홍보방문 및 고교 특강	5 ~ 10	
	4.1.03 대학주관 고교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활동	10	
	4.1.04 학과주관 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10	
	4.1.05 학과주관 고교 홍보방문 및 홍보자료 개발	5 ~ 10	
	4.1.06 학과주관 고교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활동	10	
입시지원 (4.2)	4.2.01 학과별 신입생 경쟁율	-	50
	4.2.02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	-
취업지원 (4.3)	4.3.01 취업지원활동	5	50
	4.3.02 학과별 취업률	-	100
사회봉사 (4.4)	4.4.01 학회활동	15 ~ 50	200
	4.4.02 정부 관련 조직 활동	15 ~ 50	
	4.4.03 법인단체 활동	15 ~ 30	
	4.4.04 지역사회 기여·협력	5 ~ 10	
	4.4.05 기타	5	
교내봉사 (4.5)	4.5.01 행정보직(A)	100	200
	4.5.02 행정보직(B)	70	
	4.5.03 행정보직(C)	50	
	4.5.04 행정보직(D)	30	
	4.5.05 대학평가 관련 위원장 및 위원	50	
	4.5.06 각종 위원회 위원장	50	
	4.5.07 기타 교내설치 위원회 위원장	30	
	4.5.08 각종 위원회 활동	30	
	4.5.09 기타 교내설치 위원회 활동	10	
	4.5.10 언론매체를 통한 학교 홍보활동	5	
학 교 발전기금	4.6.01 학교발전기금 납부	-	200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연간취득 가능점수
(4.6)	4.6.02 학교발전기금 유치	-	무제한
참여활동 (4.7)	4.7.01 각종 행사 참여	10	100
	4.7.02 교수활동 참여	10	
영역정성평가		-	100

2. 참여봉사영역 평가항목별 인정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입학홍보 (4.1)	4.1.01 대학주관 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주관 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 입학담당부서의 확인을 통하여 각 1회당 10점 인정
	4.1.02 대학주관 고교 홍보 방문 및 고교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주관 고교홍보 방문 및 고교 특강 ■ 방문 고교당 5점, 고교 특강 1회당 10점 인정
	4.1.03 대학주관 고교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주관 고교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주말 및 방학기간 프로그램 진행 시 1.5배 인정 ■ 10점/프로그램당
	4.1.04 학과주관 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 홍보를 위한 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 학과장 확인을 통하여 각 1회당 10점 인정
	4.1.05 학과주관 고교홍보 방문 및 홍보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주관 고교홍보방문 및 학부(과) 홍보자료개발 ■ 홍보방문결과보고서 및 홍보 자료제출 시 방문 고교당 5점, 홍보자료 개발 1건당 10점 인정

	4.1.06 학과주관 고교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 홍보 고교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지도 활동 예 : 전공체험, 동아리지도 및 논문지도 ■ 10점/프로그램당 ■ 진행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입시지원 (4.2)	4.2.01 학과별 신입생 경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과(모집단위)별 차기 학년도 정원 내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수시 및 정시의 입시경쟁율을 산술평균하여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별 신입생 경쟁률 점수 = $[(\text{정원 내 수시경쟁율} + \text{정원 내 정시경쟁율})/2] \times 10$ - (예시) 2020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시 A학과의 2021학년도 정원 내 수시 경쟁률이 3.5:1이고, 정시경쟁율이 4.0:1인 경우 신입생 경쟁률 점수 = $[(3.5+4.0)/2] \times 10$ = 37.5
	4.2.02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신입생 충원율 대비 점수 산출 : 소속 학부(과)의 차기학년도 정원 내 신입생충원율 $\times 100$ ■ 학과별 신입생충원율 증가율 대비 점수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별 신입생충원율 증가율 점수 = 차기학년도 신입생충원율 - 전년도 신입생충원율 - (예시) A학과의 차기학년도 신입생충원율이 95%이고 전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89%인 경우 증가율 점수 = $95 - 89$ = 6점 <p>※ 1. 신입생충원율 점수와 증가율 점수의 합이 100점을 상회할 경우 상회하는 해당 점수를 그대로 반영함</p> <p>2. 신입생 충원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p>

		<p>감소한 경우 증가율 점수는 반영하지 아니함</p>
	<p>4.3.01 취업지원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취업을 위하여 기업체 방문 또는 산업체 견학을 실시하고 담당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취업진로담당교원으로 활동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취업담당부서에서 그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p>※ 취업지원활동은 교육영역의 1.2.03 (학부)비교과프로그램지도 항목에 취업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 지도실적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되 프로그램당 5점으로 반영함</p> <p>※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 만점 적용</p>
<p>취업지원 (4.3)</p>	<p>4.3.02 학과별 취업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 연계 취업통계조사를 기준으로 한 학과별 취업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점수 = 학과별 취업률×100 - (예시) A학과의 기준일 취업률이 65%인 경우 : $0.65 \times 100 = 65$점 ■ 학과취업률 증가율 대비 점수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점수 = 해당 년도 취업률 - 전년도 취업률 - (예시) A학과의 기준일 취업률이 64%이고 전년도 동기 취업률이 59%인 경우 : $64 - 59 = 5$점 <p>※ 1. 전년 기준일에 대비하여 증가한 내역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증가율 점수는 0점으로 처리</p> <p>2. 신설학과로서 취업률이 산출되지 않는 학과는 대학전체 평균 취업률을 적용하고, 취업률 증가율 점수는 증가율이 산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함</p> <p>3.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 대학전체 평균 취업률 적용</p> <p>※ 다전공 학과의 평균취업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전공별 취업자수 합계 ÷ 전공별 취업대상자 합계)×100]</p>

사회봉사 (4.4)	4.4.01 학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규모 학회 회장 ; 50점 ■ 전국규모 학회 임원, 편집위원, 평이사 : 30점 ■ 지역학회 및 분회 회장 : 30점 ■ 지역학회 및 분회 임원 : 15점
	4.4.02 정부 관련 조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활동을 의미하며 위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중앙정부기관 위원회 위원장 및 기관장 : 50점 ■ 중앙정부기관 위원회 위원 및 임원 : 30점 ■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원장 또는 기관장 : 30점 ■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원 : 15점 ※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산하 기관을 포함함(예시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4.4.03 법인단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단체, 장학재단,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도단위 이상)의 장 : 30점 ■ 사회문화단체, 장학재단,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도단위 이상)의 임원 : 15점 ※ 비영리법인단체에 한함
	4.4.04 지역사회 기여·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봉사 : 1일 당 5점 ■ 우리대학교 사회봉사단에서 지원하는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봉사활동 후 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건당 10점 ■ 각종 단체 및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 : 1일 당 5점
	4.4.0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외부 작품심사 ■ 공공기관 심사(한국연구재단 과제심사 포함) 또는 자문(학회 논문심사는 제외) ■ 평생교육원 특강 포함 교내 및 외부특강
교내봉사 (4.5)	4.5.01 행정보직(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에 따른 교무위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한방병원장, 법인사무국장
	4.5.02 행정보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교육혁신원장, 평가실장, 평생교육원장, 사회협력단장, 상지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대학원부원장
	4.5.03 행정보직(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장, 중앙기기센터장, 인권센터장, 학생행복상담센터장, 국제어학원장, 산학협력단부단장(추진본부장), 산학협력단 소속 분야별 장, 체육부장, 학과장, 한의학교육실장, 한방병원 진료부

		장· 교육연구부장 , 미래교육혁신원 내 각 센터장, 사회협력단 내 각 센터장, 별도 명시되지 않은 부속기관장
	4.5.04 행정보직(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임교수, 별도 명시되지 않은 부설기관장, 부설 연구소장(개별), 보건소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교수협의회운영위원, 사회봉사단장
	4.5.05 대학평가 관련 위원장 및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대학의 중요 평가 관련 TFT위원장 및 위원 ■ 대학평가 관련 위원회 활동은 그 활동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되, 활동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년도마다 실적으로 반영함
	4.5.06 각종 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 ■ 위원회 활동이 대학 전반의 영역에 속하거나, 대학본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 상조회 운영위원장 포함
	4.5.07 기타 교내설치 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활동이 학과평가 등 단과대학(부속한방병원 포함) 내의 영역에 속하거나, 단과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5.08 각종 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 위원회 활동이 대학 전반의 영역에 속하거나, 대학본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 상조회 운영위원 포함
	4.5.09 기타 교내설치 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활동이 학과평가 등 단과대학(부속한방병원 포함) 내의 영역에 속하거나, 단과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 교내 연구소 운영위원
	4.5.10 언론매체를 통한 학교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초청강연 및 특강 ■ 신문 및 전문지 칼럼·시론 ■ 방송출연 ■ 지방언론매체는 가중치의 50%를 반영함 ■ 언론매체에 '상지대학교 교수'로 표기된 경우에 한함
학 교 발전기금 (4.6)	4.6.01 학교발전기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발전기금 납부 : 100만원을 30점으로 하고 이후 100만원 당 20점씩 반영하며, 최고 200점이 상한 점수임
	4.6.02 학교발전기금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발전기금 유치 : 100만원을 1점으로 인정하고, 상한선이 없이 인정함

참여활동 (4.7)	4.7.01 각종 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위수여식과 학교에서 요청하는 행사 참여 시 점수를 부여하며, 참석자 서명부에 기초함
	4.7.02 교수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교수회의 및 교원연수 참여 시 점수를 부여하며, 참석자 서명부에 기초함 ■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 및 연수는 전체 교수회의 및 연수 점수의 50% 반영
영역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중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각 영역별로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우수한 업적 또는 반영되었더라도 특별히 가점할 필요가 있다고 학과장의 추천과 학장의 제청이 있고 업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경우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국제학회, 국제기구 및 기관 활동 점수×1.5로 인정함(제한점수 초과인정) ■ 기타(4.4.05)의 경우 타 대학 및 학회 논문심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 교외봉사, 수상 및 공훈 실적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교내봉사(4.5) 내 각 평가항목의 합산점수는 연간 200점 이내임 ■ 평가항목 4.5.05 외에 활동기간으로 점수를 인정하는 항목은 활동 기간이 1개월 이하일 경우 1개월로 인정함 ■ 활동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점 방법은 [점수/12×활동기간(월단위)]로 산출함 ■ 교내봉사에서 인정범위 이외의 보직에 대한 인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 겸직 및 항목별 중복될 경우 그 중 최고점수만 인정함 ■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함 	

(별표5) [전부개정 2019.12.30.]

임상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1. 임상영역 평가항목 및 연간 취득가능 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연간취득 가능점수
진 료 (5.1)	5.1.01 진료실적	50	100

2. 임상영역 평가항목별 인정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진 료 (5.1)	5.1.01 진료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도 소속 병원 총 월평균수입의 90% ÷ 소속 병원 진료교수 총인원)을 기준점수로 하여 50점 부여. 단 부인과, 소아과, 정신과의 경우의 기준점수의 60% 이상 달성 시 50점 부여(소수점일 경우 반올림 정수화) - 진료실적의 가점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점수 대비 10% 이상 20%미만</td> <td>10점</td> </tr> <tr> <td>기준점수 대비 20% 이상 30%미만</td> <td>20점</td> </tr> <tr> <td>기준점수 대비 30% 이상 40%미만</td> <td>30점</td> </tr> <tr> <td>기준점수 대비 40% 이상 50%미만</td> <td>40점</td> </tr> <tr> <td>기준점수 대비 50% 이상</td> <td>50점</td> </tr> </tbody> </table>	구 분	점 수	기준점수 대비 10% 이상 20%미만	10점	기준점수 대비 20% 이상 30%미만	20점	기준점수 대비 30% 이상 40%미만	30점	기준점수 대비 40% 이상 50%미만	40점	기준점수 대비 50% 이상	50점
		구 분	점 수											
		기준점수 대비 10% 이상 20%미만	10점											
		기준점수 대비 20% 이상 30%미만	20점											
		기준점수 대비 30% 이상 40%미만	30점											
기준점수 대비 40% 이상 50%미만	40점													
기준점수 대비 50% 이상	50점													

구 분	평 가 항 목	인 정 기 준										
진 료 (5.1)	5.1.01 진료실적	- 진료실적의 감점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51 353 1294 412">구 분</th> <th data-bbox="1294 353 1417 412">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51 412 1294 477">기준점수 대비 10%미만</td> <td data-bbox="1294 412 1417 477">10점</td> </tr> <tr> <td data-bbox="751 477 1294 542">기준점수 대비 10% 이상 20%미만</td> <td data-bbox="1294 477 1417 542">20점</td> </tr> <tr> <td data-bbox="751 542 1294 607">기준점수 대비 20% 이상 30%미만</td> <td data-bbox="1294 542 1417 607">30점</td> </tr> <tr> <td data-bbox="751 607 1294 672">기준점수 대비 30% 이상</td> <td data-bbox="1294 607 1417 672">40점</td> </tr> </tbody> </table>	구 분	점 수	기준점수 대비 10%미만	10점	기준점수 대비 10% 이상 20%미만	20점	기준점수 대비 20% 이상 30%미만	30점	기준점수 대비 30% 이상	40점
		구 분	점 수									
		기준점수 대비 10%미만	10점									
		기준점수 대비 10% 이상 20%미만	20점									
		기준점수 대비 20% 이상 30%미만	30점									
기준점수 대비 30% 이상	40점											
■ 작년도 월평균수입대비 당해연도 월평균수입의												
진료개선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개선실적 10%이상 20%미만시 10점 - 진료개선실적 20%이상 30%미만시 20점 - 진료개선실적 30%이상 40%미만시 30점 - 진료개선실적 40%이상 50%미만시 40점 - 진료개선실적 50%이상 50점 												

(별표6) [전부개정 2019.12.30.] (개정 2021.03.25.)

필수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비고
교육영역	■ 책임시수	200점	연간 22시간 이상
	■ 교육혁신 활동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참여 등)	10점 이상	연 1회(건) 이상
참여봉사 영역	■ 취업지원활동	10점 이상	연 2회(건) 이상
	■ 대학주관 입시홍보 또는 학부(과) 주관 입학홍보	20점 이상	연 2회(건) 이상
비고	<p>※ 필수평가항목 적용의 예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학생이 없는 교수 및 대학원 소속 교수는 취업지원활동을 대체하여 교육혁신활동을 연간 '20점 이상, 연 2회(건) 이상'으로 적용 2. 임상교원은 책임시수(연간 8시간)를 완수하는 경우 위 점수와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교육영역 외 참여봉사영역의 필수평가항목은 적용하지 않음 		

(별표7) [전부개정 2019.12.30.]

교수업적평가 감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감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등에 따른 감점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100점/70점/50점 30점/20점

(별표8) [전부개정 2019.12.30., 2020.03.30.] (개정 2022.02.28.)

재임용 평가기준

직 급 (임용기간)	업적평가 최소점수	저명학술지 최소점수
조교수 (6년)	700	300
부교수 (6년)	800	300

1. '재임용 평가기준표'의 업적평가 최소점수는 직급별 임용기간 6년간 교수업적평가 4개 영역(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참여봉사)의 점수를 합산한 후 해당 기간으로 나눈 평균점수이며,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한의과대학(한의학과)의 임상교원은 교육 영역의 점수 중 일부를 임상영역으로 대체한다.
2. '재임용 평가기준표'의 저명학술지 최소점수는 6년간 합산한 점수이며, 교수업적평가규정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별표2)의 국제저명학술지(2.2.01),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2.2.02),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2.2.03)의 점수로서 임용기간 내 해당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연 친화 평가유형 교원의 경우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별표3) 특허 및 실용신안(3.2.01), 산업체 연구비 및 산학공동 연구비 수혜(3.2.02)의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한의과대학(한의학과) 임상교원의 재임용 시 진료실적 평가는 2017년 이전에 재임용된 교원이 2017년 진료실적평가가 신설된 이후 최초 재임용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예능계열에서 저명학술지를 대체할 경우 교수업적평가규정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별표2)의 예능계열 창작활동(2.4)의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5. 재임용의 평가기간 적용은 재임용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6년간으로 한다.
6. 2016.1.21. 이전에 부교수로 승진 및 재임용된 경우에는 저명학술지 점수를 200점으로 한다.
7. 대학통합에 따라 통합 이전 상지영서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시 상지영서대학교 재직경력은 100%반영하고 업적평가 최소점수는 통합 상지대학교 이후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적용하며, 저명학술지 최소점수는 통합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재직기간을 합하여 재임용일 기준 직전 6년간 300점을 적용한다.

(별표9) [전부개정 2019.12.30., 2020.03.30.] (개정 2022.02.28.)

승진임용 평가기준

승진예정직급	업적평가 최소점수	저명학술지 최소점수
부교수	1,200	600
교수	1,600	600

1. ‘승진임용 평가기준표’의 업적평가 최소점수는 직급별 임용기간 6년간 교수업적평가 4개 영역(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참여봉사)의 점수를 합산한 후 해당 기간으로 나눈 평균점수이며,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한의과대학(한의학과)의 임상교원은 교육영역의 점수 중 일부를 임상영역으로 대체한다.
2. ‘승진임용 평가기준표’의 저명학술지 최소점수는 6년간 합산한 점수이며 교수업적평가규정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별표2)의 국제저명학술지(2.2.01),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2.2.02),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2.2.03) 점수로서 임용기간 내 해당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연 친화 평가유형 교원의 경우 산학협력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별표3) 특허 및 실용신안(3.2.01), 산업체 연구비 및 산학공동 연구비수혜(3.2.02)의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한의과대학(한의학과) 임상교원의 승진임용 시 진료실적 평가는 2017년 이전에 재임용된 교원이 2017년 진료실적평가가 신설된 이후 최초 재임용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예능계열에서 저명학술지를 대체할 경우 교수업적평가규정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별표2)의 예능계열 창작활동(2.4)의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5. 승진임용의 평가기간 적용은 승진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6년간으로 한다.
6. 대학통합에 따라 통합 이전 상지영서대학교 교원의 승진임용 시 상지영서대학교 재직경력 100%반영하고 업적평가 최소점수는 통합 상지대학교 이후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적용하며, 저명학술지 최소점수는 통합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재직기간을 합하여 승진임용일 기준 직전 6년간 600점을 적용한다. 단, 기존 상지영서대학교 규정에 의거 2020학년도 승진대상자이나 승진임용심사가 대학통합 후 1년 이후로 유예된 경우에는 최초 승진임용 심사에 한하여 승진임용일 기준 직전 7년간 600점을 적용한다.

(별표10) [전부개정 2019.12.30., 2020.03.30]

정년보장임용 평가기준

구 분	업적평가 최소점수	저명학술지 최소점수
점 수	1,400	600

1. 업적평가 최소점수는 정년보장 예정일 기준 직전 6년간 업적평가 총점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나눈 연평균 점수를 반영하되 2020. 01. 01이후 연평균 업적평가점수만 대상으로 하고, 저명학술지 최소점수는 직전 6년간의 합계점수를 반영한다.
2. 저명학술지 기준점수는 교수업적평가규정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별표2) 국제저명학술지(2.2.01),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2.2.02),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2.2.03)의 점수로서 직전 6년의 기간 동안 해당점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3. 예능계열에서 저명학술지를 대체할 경우 교수업적평가규정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별표2)의 예능계열 창작활동(2.4)의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5. 대학통합에 따라 통합 이전 상지영서대학교 교원의 정년보장임용 시 상지영서대학교 재직 경력은 100%반영하고 업적평가 최소점수는 통합 상지대학교 이후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적용하며, 저명학술지 최소점수는 통합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재직기간을 합하여 정년보장임용일 기준 직전 6년간 600점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부개정 2019.12.30.]

교수업적평가 이의신청서

성 명		소 속	
직 급		이의신청 평가연도	
이의신청 평가영역			
이 의 신청내용			
20 . . .			
이의신청인 : _____ (인)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위원장 귀하			